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660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660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1055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숙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안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29. 선고 2022가단1105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21. 6. 9.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6. 9. 접수 E로 경로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소외 D 사이에 2021. 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2. 15. 접수 F로 경로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3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소외 D 사이에 2022. 3. 28.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안양시 차량등록사업소 2022. 3. 28. 접수 G, H로 경로된 각 명의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별지 1, 2 기재 자동차 총 4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같은 자동차 4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별지 및 매매계약 일자를 정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의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취지의 일부 정정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다음에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4991호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대여금의 합계 226,230,690원(주위적 청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정산금 합계 220,485,870원(예비적 청구)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 1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381호로 항소하여 진행 중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 청구를 감축하고 퇴직금 청구 및 대여금 청구를 각 확장하여 합계 345,865,290원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1) ”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태, 판사 이수영, 판사 김경진

별지

1)대법원 2024다219285호로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